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10
----------	------

발의연월일 : 2025. 1. 2.

발의자 : 송석준 · 이종욱 · 김종민

김선교 · 김성원 · 김예지

이종배 · 서범수 · 박형수

윤상현 · 박덕흠 · 조배숙

주진우 · 유상범 · 김미애

장동혁 · 이현승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 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

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